

(총4면중 1면)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접수기관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유형	<input type="checkbox"/> 3가(항일독립운동) <input type="checkbox"/> 3나(해외동포사) <input type="checkbox"/> 3다(6.25 집단희생) <input type="checkbox"/> 3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input type="checkbox"/> 3마(적대세력 테러·폭력) <input type="checkbox"/> 3바(법원판결제심) <input type="checkbox"/> 3사(역사적 중요 사건) <input type="checkbox"/> 3아(사회복지·입양·집단수용 시설) <input type="checkbox"/> 3외(3·15의거 사건) <input type="checkbox"/> 3기(기타, 비해당)	

신청인 (단체)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사건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유족, <input type="checkbox"/> 경험·목격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당시 소속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해자					
가해자					

사건관련 기관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거자료	자료명	내용

진 정 조 사 여 부	진정일자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처리일자

신청의 취지	
사건의 내용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추가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제54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한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활동기간 동안 보관하고 활동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 2.와 같음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별지] 민원인(신청인)에게 교부

진실규명 신청서 양식[제5호서식]에 관한 안내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6. 1. 29.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26. 2. 26. 출범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과거사정리법」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근거, 2기 위원회 규칙의 양식을 준용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아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이 변경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이용도 기존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 업무 외에도 제48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방지·국민화해와 통합 업무와 제54조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업무에도 수집·이용될 수 있어 해당내용을 보완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양식 개정 전 접수된 신청은 적법하고 유효한 바, 차후 별도의 추가신청 필요

2기 신청서(기존 양식)	
(4면 의 1면)	<input type="checkbox"/> 2가(항일독립운동) <input type="checkbox"/> 2나(해외동포사) <input type="checkbox"/> 2다(6.25 집단희생) <input type="checkbox"/> 2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input type="checkbox"/>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input type="checkbox"/> 2사(역사적 중요 사건) <input type="checkbox"/> 2바(법원판결제심) <input type="checkbox"/> 2의(3·15의거 사건) <input type="checkbox"/> 2기(기타, 비해당)
(4면 의 2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4면 의 4면)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 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접수일	년	월 일
접수자	(직급)	(성명)
<p>위와 같이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 0;">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기관장)</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직인 또는 접수인 날인</p>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